



세·번·상·식

축산분뇨의 비료화

토지를 기름지게 하고 초목의 생육을 촉진시키는 것이 비료이다. 비료는 토양의 생산력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고, 작물을 잘 생장시키기 위하여 토양 또는 식물에 투입하는 영양물질과 직접적으로는 작물의 영양물질이 되지 않더라도 토양의 물리적 화학성 등을 개선하고 유용한 미생물들을 증진시키며, 토양 중에 식물에 이용될 수 없는 형태로 있는 양분을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바꾸어 준다든지, 유독성 물질의 독성을 저감시키는 등 간접적으로 작물의 생육에 도움을 주는 물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비료관리법에서는 비료를『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돋기 위하여 홀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과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비료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은 여러 가지이나 그중 중요한 것이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영양성분이 어느 일정량 이상 함유되어 있고, 식물생육이나 환경 보전에 대하여 유해한 물질이 들어있지 않을 것, 수송·저장·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 가격이 저렴하고 비효(肥效)가 높아 농업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등이다. 비료는 크게 친연 유기질 비료와 인조비료(또는 화학비료)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종래의 화학비료가 석회질소와 요소를 제외하면 무기염 재질의 것이 주를 이루었으므로 유기질(천연)비료에 비하여 광물질 비료라 불렸으나 근래에는 화학비료에도 유기질의 것이 많이 생산·유통·사용되고 있으므로 무기질·광물질 비료라는 명칭은 적당한 구별법은 아닐 것이다.

최초의 화학비료는 골분에 황산 작용시킨 수용성 인산

화학비료 시초는 1841년 독일의 J.리비히가 골분(骨粉)에 황산을 작용시켜 얻은 수용성 인산을 만들어 냄으로써 이것이 화학비료로 유효함을 보여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비료 특히 화학비료에는 질소·인산·칼륨(이상 비료의 3대 성분), 석회·마그네슘·규산·망간 그 밖의 비료 요소 중의 1종 또는 2종 이상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질소·인산·칼륨을 비료의 3대 요소라 함에 빗대어 망간·철·아연 등과 같은 성분을 특히 미량요소비료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는 마치 동물 특히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분 중 녹말·단백질·지방을 3대 영양소라하고 미량이지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성분으로 비타민이 꼭 필요하듯이 비료에 있어서 미량요소는 식물의 정



상적인 생육을 위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될 마치 비타민과 같은 것이다. 유효성분이 농축된 화학비료에 밀려 뒤쪽으로 쳐졌던 천연 유기질 비료가 근래에 와서 다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그러한 천연 유기질 비료에 의해 생산된 농작물이 웰빙 봄과 맞물려 고가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 또한 오늘날의 현상인 것이다. 두엄이라고도 불리는 짚·잡초·낙엽 등을 퇴적하여 부숙 시킨 퇴비나, 가축 분뇨를 원료로 한 유기질 비료, 때로는 뒷거름이라고 별칭 되는 인분·인뇨를 부숙 시켜 만든 인분뇨(물론 요즈음에는 악취문제와 위생상 문제점 때문에 많이 활용되지는 않지만) 등이 그러한 천연 유기질 비료 등이다. 장단점 중 어느 한쪽만을 강조시켜 화학비료냐? 아니면 천연유기질 비료 만이냐? 하는식의 둘 중 하나 만의 선택이 아닌 2가지 비료의 치우치지 않은 조화로운 사용이 농작물의 품질·토질문제·인류의 건강문제·환경문제 등 모든 면에서 이로울 것이다.

며칠 남북 교역 문제를 다루는 어느 회담에서 국내의 유명 닦고기 생산업체에서 북측에 우리의 기술과 자본으로 축산분뇨를 비료화하여, 함께 그곳에 축산사료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생산 된 축산물을 남측에 반입하는 형태의 남북 협력사업이 검토되고 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다. 한두 세대 전과 같이 농촌 가정에서 생계용으로 가축 한 두 마리씩 키울 때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요즘과 같이 기업형으로 대단위 목장을 설치하고 거기서 배출되는 분뇨는 이미 환경공해 유발물질로 사회적 문제로 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해물질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 그로부터 공해와 무관한 농산물을 생산 한다는 것은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보는 것이다.

이러한 유익한 사업이 성공하여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현행 관세율 표에서는 동물성·식물성 비료 또는 화학비료를 모두 HS 31류(비료)에 분류하고 있다.

자료출처 : 관세무역정보



통 / 관 / 뉴 / 스

▶ 수입신고후 검사대상물품의 이고반출입신고 허용

인천항은 부두직반출 신청수 수입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CFS(화물검사장)가 없는 CY에서 CFS가 있는 CY로 이동시 반출입등록이 곤란하여 수입신고를 취하하여야 하는 민원 불편사항에 대하여 수입신고후 수입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 한하여 '이고반출입신고' 허용으로 검사장소에서 수입신고수리후 직반출할 수 있도록 수입화물시스템을 개선하여 2005.10.3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관련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관세청에서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로 인한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5.4.12 '원산지 제도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오인표시·부정적·허위표시 등 위반유형을 상세히 규정·명문화하고, 최근에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이 종전 의료·신발·완구류 등에서 김치, 육류, 과자류, 골프채 및 전기전자제품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고, 특히 일부 중국산의 경우 통관후 국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되다가

직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원산지표시관련 업무처리시 유의사항을 시달 했다. 관세청은 특히 원산지표시원칙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크기(활자체)로 선명하고 견고

하게 표시하여야 하고(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 OEM생산물품 등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당해물품(포장)의 전면(前面)·상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야 하며,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의 윗줄·아랫줄에 원산지를 표시

하여야 함(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4조제2항, 원산지제도운영

고시 제5-2조)을 명확히 했다.

또 최근의 원산지표시 위반시사례로는 △오인표시 △부적정 표시 △미표시 △검사결과 등록누락 등을 꼽고 원산지표시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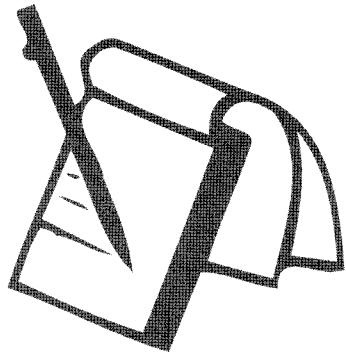




무역정보



업무처리시 ▶검사단계 원산지 확인철저 ▶원산지표시 이무이행요구 ▶기타 고시규정의 관련절차 철저 이행 등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축산물의 표시기준 중 개정 고시

축산물의 표시기준이 새롭게 대두되는 사항에 대하여 국제표시기준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등의 표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고, 현행 고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일부 개정됐다. 주요내용은 축산물가공품의 원재료 표시개선, 축산물가공품중 원재료의 함량표시, 축산물가공품 영양표시 의무화, 포장육 및 수입식육의 유형표시, 조사처리 축산물에 대한 표시, 식용란에대한 권장 표시기준 마련, 식육가공품의 개별표시기준 개정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 (<http://www.nvrq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